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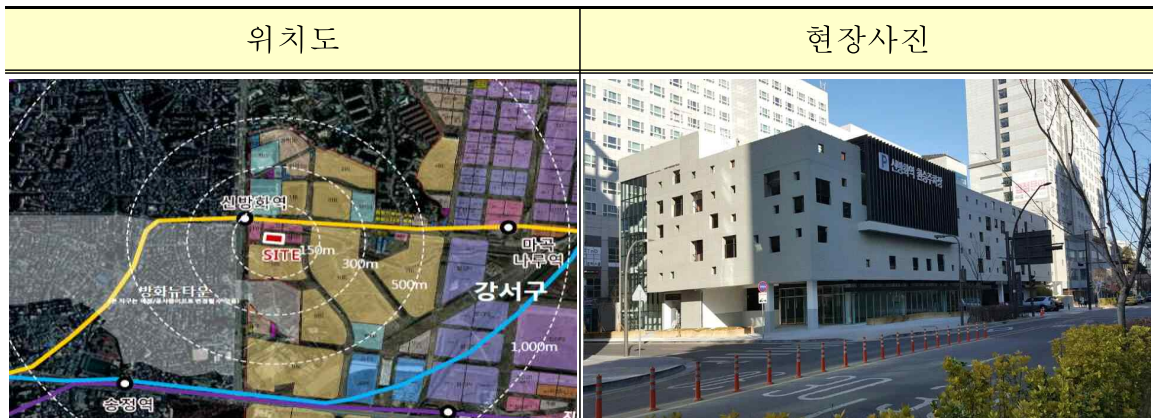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 제1647호
- 다. 제출일자 : 2017. 2. 13.
- 라. 회부일자 : 2017. 2. 15.

2. 제안사유

- 가. 신방화역 환승주차장은 강서구 방화동 주택밀집지역과 마곡지구 아파트 단지 경계 지점에 위치하여 마곡지구 유출입 승용차량을 흡수하고자 건립된 환승주차장으로,
- 나. 전문적인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 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 사업기간 : '15.10 ~ '17. 2.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I2 BL
 - 시설규모 : 대지 2,636㎡, 연면적 7,878㎡(지하1층 / 지상3층)
 - 주차장 200구획, 자전거보관소 244대, 근린상가 3개소 등



나. 주요 대행 업무

- 대행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대행기간 : 5년('17. 3. ~ '21.12)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서('16.12.30) 적용
- 대행업무
 - 신방화역 환승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이용자 불편해소
 - 주차장 시설물, 자전거보관소 등 유지관리 및 개보수
 - 근린상가의 안정적인 관리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 화재·수해 등 재난매뉴얼 작성 및 사고예방 등
- 주차요금

급지	구획수	주차요금		운영시간
		시간주차	월정기권	
4	200	5분당 100원	일반 65천원 환승 40천원	24시간 연중무휴

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신방화역 환승주차장은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로 수익 추구 보다는 주민복리 등 공공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설임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신방화역 환승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대행함으로써,
- 공단의 축적된 주차관리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설물 및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민원통합대응, 주차장 운영실태 상시 관리감독 등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운영의 조기 정착과 시설 이용활성화가 가능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② ~ ③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동의안은 올해 2월말 준공 및 3월초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신방화역 환승주차장의¹⁾ 운영·관리 등 관련 업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대행토록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완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경비·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사업개요

- 위치 : 강서구 방화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I2 BL
- 시설규모 : 대지면적 2,636㎡(연면적 7,878.39㎡), 환승주차장 200면(지하1층 / 지상3층), 근린상가 3개소, 자전거보관소(244대) 등
- 총사업비 : 19,149백만원(시비 15,749, 분담금 3,400)
- 공사기간 : 2015년 10월 ~ 2017년 2월

나. 검토의견

- 지난 해 서울시는 전체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공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전문 인력에 의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보수·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공영(시영)주차장 위탁관리 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²⁾, 후속 조치로 관련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지난 제26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해당 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음³⁾
- 그에 따라 2017년 1월말 현재 공단은 서울시 공영주차장 144개소 전체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⁴⁾ 49개소는 공단 직영으로 95개소는 자치구시설관리공단, 상인회, 민간사업자⁵⁾ 등에 제3자 위탁을 하고 있음
- 동 동의안은 신규로 건설되어 개장하는 신방화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공단에 위탁하여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공단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므로 필요하다 할 것임
- 다만,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공단 인력 규모의 적정성 및 인력 재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단 인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공영(시영)주차장 위탁관리 체계 개선 계획, 주차계획과-3922(2016.3.24.)

3)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2016.6.20. 상정·의결), 본회의(2016.6.27. 상정·의결)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5) 자치구시설관리공단 16개소, 시장상인회(신중부시장상인회, 관철동상인회, 남산상인회, 평화시장상인회) 4개소, 민간사업자 등 75개소